


등록번호	연구운영과- 1637
등록일자	2015. 3. 27.
결재일자	2015. 3. 27.
공개구분	공 개

농업연구관	연구운영과장	연구정책국장	결 재
유성철	이 지원	김진호	

◎ 보고자 : 연구운영과 농업연구사 윤남규 

##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

2015. 3.

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교육·홍보 자료로 활용되어온 회의비 관련 집행 기준을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#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

## □ 목 적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」 제정(13.11.13) 및 적용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
- ☞ 「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### ① 「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

- “Ⅱ. 연구개발비의 산정”의 “2.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”의 “가. 직접비”의 “(5) 연구과제추진비”의 “③ 세부 사용기준”의 마지막 회의비 불인정 항목에 다음 사항 추가
  -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함
- “【참고 2】 연구개발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”의 “연구활동비·연구과제추진비”에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례로 추가
  -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
- “Ⅵ. 기타사항”
  - “□ 본 지침은 운영규정(훈령 제1028호)과 관련한 지침으로서, 동 규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” → “□ 본 지침은 운영규정(훈령 제1028호)과 관련한 지침으로서, 개정일부터 적용한다.”
  - “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을 준용한다.” → “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한다.”

- “【별표 5】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”의 “1.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”의 “아.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”
  - 직접비 > 연구과제추진비 > 2) 회의비 : “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” → “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하였거나,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”

#### □ 금후 계획

- 일부개정된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소속기관 공문 발송

**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**  
**신구조문 대비표**

현행('14.11)	일부개정('15.3.27)
<b>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</b>	
<p><b>II. 연구개발비의 산정</b></p> <p>2.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</p> <p>가. 직접비</p> <p>(5) 연구과제추진비</p> <p>③ 세부 사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협의회 등 각종회의, 세미나, 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, 소요시간, 장소, 참석자 명단 및 서명, 회의내용 등이 명기된 증빙서류를 비치</li> <li>*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함</li> <li>* 노래방비, 술값(酒代) 등 유흥성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식대는 전액 불인정</li> </ul>	<p><b>II. 연구개발비의 산정</b></p> <p>2.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</p> <p>가. 직접비</p> <p>(5) 연구과제추진비</p> <p>③ 세부 사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협의회 등 각종회의, 세미나, 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, 소요시간, 장소, 참석자 명단 및 서명, 회의내용 등이 명기된 증빙서류를 비치</li> <li>*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함</li> <li>* 노래방비, 술값(酒代) 등 유흥성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식대는 전액 불인정</li> <li>*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함</li> </ul>
<p><b>【참고 2】 연구개발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비·연구과제추진비</p> <p>○ - - - - -</p>	<p><b>【참고 2】 연구개발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사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비·연구과제추진비</p> <p>○ - - - -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</li> </ul>
<p><b>VI. 기타사항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 - - - -, 동 규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 - - - - 관련 법을 준용한다.</p>	<p><b>VI. 기타사항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 - - - -, 개정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- - - - - 관련 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한다.</p>

현행('14.11)	일부개정('15.3.27)
<b>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</b>	
<p><b>【별표 5】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</b></p> <p>1.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</p> <p>    아.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직접비 &gt; 연구과제추진비</p> <p>2) 회의비 :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</p>	<p><b>【별표 5】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</b></p> <p>1.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</p> <p>    아.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직접비 &gt; 연구과제추진비</p> <p>2) 회의비 :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하였거나,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</p>